

# 재벌개혁 후속조치 방안 발표

- 10대 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, 출자총액제한제도 2001년 부활 -

재정경제부,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는 지난 8월 25일(수) 정·재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 간담회에서의 합의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재벌개혁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.

동 재벌개혁 후속방안은 동 간담회에서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투명한 기업경영지배구조 정착과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의 억제, 변칙적인 부의 세습 차단 및 제2금융권 지배방지 등 정부의 재벌개혁 3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. 정부는 무엇보다 재벌기업의 자기자본대비 출자총액한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, 동 제도를 부활함으로써 순환출자를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.

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발표한 재벌개혁 후속조치 방안은 다음과 같다.

## I.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

### 1) 문제제기

- 외환위기 이후 재벌소유 제2금융권의 시장지배력이 급속히 확대된 반면, 투신·보험업은 전부가 비상장기업으로서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업지배구조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, 이와 함께 자금흐름의 차단벽(fire-wall)이 불완전하여 계열사에 편중된 자금조달의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자원배분 및 투자자 보호에 문제점이 우려됨

### 2) 향후 개선계획

#### ① 경영지배구조 개선

- 제2금융권에도 은행과 같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, 전체 이사회의 1/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, 이들에게 독립성·전문성·책임성을 부여

-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

-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,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준법감독관(Compliance officer) 제도 도입

- 일반 상장기업보다 소수주권의 행사요건을 1/2 수준으로 완화

#### ② 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차단벽(fire-wall)을 강화

- 자산운용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
- 투신사 및 보험사의 동일인 및 자기투자한도 규제대상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관련 회사도 포함토록 보완
- 투신사·보험사의 자기계열에 대한 투자 및 여신한도를 축소 조정
- 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액신용 공여한도 제도를 보험사에도 도입·시행하는 등
- 자산운용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능 강화
- 대기업 계열펀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팀을 금감원에 설치

- 투신사의 대규모 펀드에 대해 외부감사 실시
- 상호교차, 우회투자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철저히 감시하여 위반시 처벌 강화
- 생명보험사의 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을 구분 계리

#### ③ 경영투명성 제고

-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을 계기로 계열사간의 자금거래 등을 투명하게 관리
- 비상장금융기관에도 2001.1.1.부터 분기별 사업보고서 제도를 도입  
(상장금융기관은 2000.1.1.부터 도입하기로 법령에 기 반영)
- 투신사의 고객에 대한 자산운용정보제공의 질 제고

#### ④ 경영책임의 강화

-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손해배상 책임 추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
- 금융기관 설립시 대주주에 대한 재무건전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실기업의 금융업 진출 억제

## 2. 기업지배구조 개선

#### 1) 문제제기

- 상장회사에 대해 사외이사가 의무화되었지만,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가 미흡하고 이사회 내에서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
- 기관투자가에게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영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소극적
- 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경영의 책임성 미흡

#### 2) 향후 개선계획

우선 민간기업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고,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·제도를 보완

##### ① 「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」 제정

- 그동안 민간인으로 구성된 「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」가 성안한 「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」을 기업들이 이행도록 뒷받침

##### \* 「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주요 검토과제」

- ① 의결권 행사방법의 다양화 등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
- ② 집중투표제도 활용 및 소수주주의 경영참가기회 확대방안 및 지배주주의 경영책임성 강화방안

##### ② 정부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 보완

- 대규모 상장기업 등의 경우 사외이사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현재 총이사수의 1/4 이상에서 1/2 이상으로 확대
-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
- 기관투자가가 권리행사지침을 마련하여 경영 감시기능을 강화토록 금융감독규정에 반영

##### ③ 기타 관련법령의 정비

- 현행의 감사제도를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제도로 대체(상법 개정후 증권거래법 개정 추진)
- 주주총회 및 이사회 활성화방안을 상법 개정 안에 반영

## 3. 변칙 상속·증여의 방지대책

#### 1) 문제제기

- 부의 세속화를 시정하는 상속세 기능이 외국에 비해 미약
-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변칙 상속·증여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

## 2) 향후 개선계획

- 상속·증여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상향 조정
- 세무행정을 엄정히 집행할 수 있도록 고액재산가의 인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, 상속·증여에 대한 과세시효(15년)를 평생으로 연장하고, 상속·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나이와 금액 제한없이 금융거래자료를 일괄 조회

## 4. 순환출자의 억제

### 1) 문제제기

- '99.4.1. 현재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은 지난해의 17.7조원에서 29.9조원으로 12.2조원 증가하였는데, 이중 유상증자 참여 등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10.9조원 늘어나 전체 증가액의 89%를 차지
- 이에 따라 3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이 '98년의 44.5%에서 50.5%로 상승하였으며, 특히 계열사의 지분율은 35.7%에서 44.1%로 상승
- 이와 같은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증가에 따라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되고, 외부에서 유입되는 실질적 자기자본의 증가없이 부채 비율을 용이하게 감축하는 한편,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문제가 제기

### 2) 향후 개선계획

#### 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

- 금년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도입하되, 시행시기는 2001년 4월로 함
- 출자한도, 해소시한, 예외인정범위 등 보완대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제도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해 별도 강구

#### ② 결합재무제표에 의한 순환출자 간접규제

- 내년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한 그룹별 부채비율의 감축을 유도하여 순환출자를 간접규제
- 금융기관은 각 그룹별 결합재무제표에 의해 산정된 부채비율을 여신운영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순환출자 감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

#### ③ 재무구조개선약정(부채비율 감축) 이행상황 점검 강화

-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계열사 출자분은 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 규모에서 제외

## 5. 부당내부거래 차단

### 1) 문제제기

- 계열회사간의 부당내부거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다각화와 선단식 경영의 핵심 수단이 되어 왔으며, 이로 인해 우량기업의 핵심 역량(core competence)이 분산되고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가 초래되기도 함
- '98년 이후 3차례 결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부당내부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는 경향

### 2) 향후 개선계획

## 공정위 업무활동

### ① 부당내부거래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(공정거래법 개정)

- 1~10대 그룹 계열회사의 일정규모 이상 내부 거래(대규모내부거래)는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하도록 제도화(공정거래법 개정)
- 소액주주,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제도를 도입

### ② 부당내부거래 유형의 구체화

- 조사 결과 적발된 부당내부거래 유형을 심사 지침에 구체화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

### ③ 부당내부거래의 관행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한 조사 강화

-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등 구조조정을 지원시키는 부당지원에 대해서는 고액의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

## 재벌개혁 후속조치방안 주요내용

### 순환출자 억제

- 출자총액제도 부활 : 2001년 4월  
- 2000년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한 순환출자 간접 규제
-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상황 점검 강화

### 부당내부거래 차단

- 일정규모 이상 내부거래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하도록 제도화  
- 1~10대 기업집단 대상
-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도입
- 부당내부거래 심사지침 구체화

###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

- 사외이사제 확대 : 전체 이사의 1/2 이상
- 감사위원회 도입 의무화(소규모 금고 제외)
- 준법감독관 제도 도입
- 소수주주권 강화(대표소송제기권 행사요건 완화 : 0.01% → 0.005%)
- 관련계열 지정
- 투신사 자기계열 투자한도 축소(신탁재산의 10% → 7%)
- 보험사 자기계열 여신한도 축소(총자산의 3% → 2%)
- 분기별 사업보고제도 도입 : 2001년부터
- 결합재무제표 시행 : 1999년 회계연도부터
-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손해배상 책임 추궁(예보)
- 보험사에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 도입
- 금감원에 대기업 계열펀드 모니터링팀 설치
- 투신사 대규모펀드에 외부감사 실시
- 상호교차, 우회투자행위 금지규정 신설
- 생보사 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 구분 계리

### 기업지배구조 개선

#### (상법개정 시행)

-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
- 대규모 상장기업(총자산 1조원 이상) 사외이사비중 확대  
- 총이사의 1/2
- 사외이사 중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
- 기관투자가 권리행사 지침 제정
-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
- 서면투표제도, 영상회의에 의한 이사회 결의 등 협용
- 이사회 내 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
- 이사회 의사록 기재 강화

### 변칙적 상속 증여방지

- 상속증여세 과세대상 확대 및 세율 상향조정
- 고액재산가 인별관리 강화 및 과세시효 연장
- 대주주 주식거래 양도처익 과세 및 비상장주식 증여과세 강화
- 대주주 범위 : 자본을 5% → 3% 축소 시기총액 100억원 이상 자분소유자
- 양도처의 세율 : 20% 단일세율 → 20~40% 누진세율
- 경영권 포함된 주식 상속·증여 : 20~30% 할증과세
- 공익법인 통한 변칙적 지배 방지  
- 계열사 주식보유 비중 30% 이하로 제한